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안 제4조)

-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내
- 2)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규정(안 제5조제1항)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1) 제7조제2항 → 제7조제3항 (안 제5조제2항제1호)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12조)
1)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개정

라.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시 수익계약 대상 신설(안 제20조의2)

- 1)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대상품목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
- 2) 수익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
- 3)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를 조례에 반영

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의2)

- 1) 두 번 이상 갱신 신청시 제출할 서류 규정(안 제22조의 2제1항)

- 2) 갱신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 (안제22조의2제2항)
- 바. 일반재산 대부시 수의계약 대상 신설 (안 제24조의2)
 - 1)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대상품목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
- 사.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26조)
- 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조항 신설 (안 제 32조제2항)
- 자.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조정 범위의 확대
 - 1)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
→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안 제34조)
- 차.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추가(안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40조제2항)
 -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및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 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등
 -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5.07.31 ~ 2015.08.20)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관련규정 발췌문 : 붙임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
- ③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민간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회계연도 시작 40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제13조제3항 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및 「임실N치즈 및 임실 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공동 상표 사용승인을 받

은 품목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임실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공산품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영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 및”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 능력
2. 관리수탁자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및 「임실N치즈 및 임실 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공동 상표 사용승인을 받

은 품목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이 대부분을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임실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공산품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이 대부분을 신청하는 경우

제26조 중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를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를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로 한다.

제28조제4항제5호 중 “제3조제1호 내지”를 “제3조제1호에서”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20조의2 제①항 및 제24조의2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 이상 증가하여”를 “5이상”으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는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제67조를 삭제하고, 제68조를 제6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계약으로 가능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제24조의2, 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매각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 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 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p> <p>③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다. 다만, 위촉 시 어느 한 성(性) 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p>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생략)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인 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1.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현행 제1호와 같음)

<삭 제>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 및 「임실군 건축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4.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는 폐지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② -----
-----심의회의-----

1. ----제7조제3항-----

2. -----
-----토지의 취
득·처분

3.·4.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회계연도 시작 40일-----
-----,

-----.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및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임실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공산품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영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 ③ 영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제19조 및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 능력
2. 관리수탁자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신 설>

4.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및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이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임실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공산품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이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

1.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3조제1호에서 -----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13조제9항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7조제6항,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20조의2 제①항 및 제24조의2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5
이상 -----
-----.

1. ~ 3.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② 영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는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삭제>

제67조 (현행 제68조와 같음)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재무과장 박 상 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55		
정책명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명	고혜연	전화번호 063-640-221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1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재무과)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p> <p>○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 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08월 19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복지과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63-640-2123)</p> <p>재무과장 귀하</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생략)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간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부하는 경우
-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제2조(토지취득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국제기구) 「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9.6.9>

국제기구(제2조 관련)

구 분	국 제 기 구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합(UN)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 유엔개발계획(UNDP) • 유엔인구기금(UNFPA)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 유엔대학(UNU) • 유엔봉사단(UNV) • 세계식량이사회(WFC) • 세계식량계획(WFP)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국제노동기구(ILO) • 국제해사기구(IMO)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만국우편연합(UPU) • 세계보건기구(WH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세계기상기구(WMO) • 국제원자력기구(IA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유엔환경계획(UNEP) •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 유엔아동기금(UNICEF) • 유엔마약위원회(UNCND) • 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UNCTC) •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금융공사(IFC) • 국제개발협회(IDA) • 세계관광기구(UNWTO)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 세계무역기구(WTO) • 제네바군축회의(CD) • 유엔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정부 간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WHO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C) • 아시아·아프리카농촌개발기구(AARDO) •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 아시아·태평양식물보호위원회(APPPC) •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공동체(APT)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아시아·태평양지역농촌종합개발센터(CIRDAP) •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 국제교육국(IBE) • 국제도량형국(IBWM)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 국제민방위기구(ICDO) • 국제수로기구(IHO)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 국제수역사무국(OIE)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 국제이주기구(IOM)
- 국제포플러위원회(IPC)
- 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IPFC)
- 국제포경위원회(IWC)
- 동남아교육장관기구(SEAMEO)
-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 세계관세기구(WCO)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
- 아시아개발은행(ADB)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SEANZA)
- 국제백신연구소(IVI)
- 유엔기념공원(UNMCK)
- 국제무역센터(ITC)
- 국제결제은행(BIS)
- 국제의회연맹(IPU)
- 콜롬보플랜(Colombo Plan)
- 지구환경금융(GEF)
- 국제납·아연연구그룹(ILZSG)
- 상품공동기금(CFC)
- 섬유수출개도국기구(ITCB)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

-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 아시아·태평양수산물위원회(APFIC)
- 중서대서양수산물위원회(WECAFC)
- 중동대서양수산물위원회(CECAF)
- 동남대서양수산물위원회(ICSEAF)
- 북대서양수산물기구(NAFO)
- 인도양수산물위원회(IOFC)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 국제사탕기구(ISO)
- 생물다양성협약(CBD)
- 국제곡물이사회(IGC)
-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 국제박람회기구(BIE)
- 국제해저기구(ISA)
-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 상설중재재판소(PCA)
- 국제에너지기구(IEA)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 미주개발은행(IDB)
-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 국제미작연구소(IRRI)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 정보공유센터(ReCAAP ISC)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 아시아·태평양식량비료기술센터(FF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준정부 간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지역최고감사기구(ASOSAI) • 국제군인체육이사회(CISM) • 국제항만협회(IAPH) • 국제기록보존기구(ICA) • 국제군인의약협회(ICMM) • 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 • 국제표준화기구(ISO) •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국제상설항해협회(PIANC)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농 지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